

##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06년 1월 27일 조례 제 865호  
개정 2007년 4월 23일 조례 제 920호  
개정 2008년 6월 13일 조례 제 975호  
(정부조직법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2009년 8월 7일 조례 제1045호  
전부개정 2014년 4월 4일 조례 제1354호  
일부개정 2016년 6월 2일 조례 제1495호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 2017년 9월 26일 조례 제1621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62호  
일부개정 2024년 3월 25일 조례 제21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오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따른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4. 디지털광고물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3>

1.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들출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4.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

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약회의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약회의의 구성·운영)** ① 주민협약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약회의의 위원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주민협약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④ 위원장은 주민협약회의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약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약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약회의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주민협약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약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③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①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1.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 제외)
2. 벽보

3. 전단지(옥내 배포된 전단지 제외)

② 현수막 등을 수거한 자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거한 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④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3>

⑦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3>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과 도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소위원회의 심의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

치도록 한 사항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및 선정방법,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하고, 수탁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이하 “지정게시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 및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3>

③ 시장은 지정게시시대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② 시장은 관리자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

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을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교부하고,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고,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신청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체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는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경우
4.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으로 시장이 추진하는 광고물 정비 사업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④ 삭제 <2021. 12. 23>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부칙** <2017. 9. 26 조례 제162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부터 ㉗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25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 3. 25>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제13조 관련)**

1.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수 거 보 상 금				
종	류	규	격		단위			
현	수	막	면적 3㎡ 이상	장	1,500원			
			면적 3㎡ 미만	장	700원			
			족자형	장	700원			
벽	보	벽보 A4 이상	100매	5,000원				
		벽보 A4 미만	100매	3,000원				
홍	보	용	전	단	지	크기 10cm×6cm 이상	100매	2,000원
명	함	식	전	단	지	크기 10cm×6cm 미만	100매	1,000원

가.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명 1주 225,000원 이내,  
1명 1개월 900,000원 이내로 한다.

나. 수거 참여 자격

종	류	자	격	비	고
현	수	막	· 20세 이상의 시민		
벽	보	· 전	단	지	·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보상금 신청요건

가. 수거대상 지역 : 시 전지역

나. 보상대상

- 1) 전주·가로수·가로등주·도로변에 부착된 현수막·벽보
- 2) 인도·광장에 배포된 홍보용전단지·명함식전단지

다. 보상 제외대상

- 1) 시 현수막지정계시대 부착 광고물
- 2) 아파트단지·상가 내 등 옥내에 살포 또는 부착된 광고물
- 3) 형체와 매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4) 신문 전단지 등

[별표 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45만원
- 16㎡ 이상 18㎡ 미만	165만원
- 18㎡ 이상 2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9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면적 20㎡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30만원
- 0.5㎡ 이상 1㎡ 미만	35만원
- 1㎡ 이상 2㎡ 미만	40만원
- 2㎡ 이상 3㎡ 미만	48만원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55만원
- 3.5㎡ 이상 4㎡ 미만	65만원
- 4㎡ 이상 4.5㎡ 미만	80만원
- 4.5㎡ 이상 5㎡ 미만	95만원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110만원
- 6㎡ 이상 7㎡ 미만	130만원
- 7㎡ 이상 8㎡ 미만	150만원
- 8㎡ 이상 9㎡ 미만	170만원
- 9㎡ 이상 10㎡ 미만	190만원
4) 면적 10㎡	20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30만원
- 2㎡ 이상 3㎡ 미만 35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8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210만원
- 25㎡ 이상 30㎡ 미만 230만원
- 30㎡ 이상 35㎡ 미만 245만원
- 35㎡ 이상 40㎡ 미만 260만원
- 40㎡ 이상 45㎡ 미만 280만원
- 45㎡ 이상 50㎡ 미만 290만원

5) 면적 50㎡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30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 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 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 면적 20㎡ 75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30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 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 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 면적 20㎡ 8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150만원
- 면적 10㎡	16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10만원
- 1㎡ 이상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29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35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다) 면적 5㎡	50만원
- 5㎡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벽면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

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5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지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 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4]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3,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3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15,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8,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35,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15,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9,000원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면적 또는 연면적 5m <sup>2</sup> 초과시 1m <sup>2</sup> 마다 더하는 금액	10,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4,000원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m <sup>2</sup> 이하	3,000원
- 10m <sup>2</sup> 초과시 1m <sup>2</sup>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m <sup>2</sup> 이하	3,000원
- 10m <sup>2</sup> 초과시 1m <sup>2</sup>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파. 벽보(1건)	3,000원
하. 전단(500매마다)	3,000원
거.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5]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18,000원
	- 면적 5㎡ 초과 20㎡ 이하	26,000원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18,000원
	- 면적 3.5㎡ 초과 10㎡ 이하	26,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27,000원
	- 면적 50㎡ 초과 70㎡ 이하	49,000원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18,000원
	- 면적 10㎡ 초과 20㎡ 이하	26,000원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14,000원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6]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7] <개정 2021. 12. 23>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p>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p> <p>가) 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미만</li> <li>- 0.5㎡ 이상 0.8㎡ 미만</li> <li>- 0.8㎡ 이상 1㎡ 미만</li> </ul> <p>나) 면적 1㎡ 이상 2㎡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이상 1.3㎡ 미만</li> <li>- 1.3㎡ 이상 1.6㎡ 미만</li> <li>- 1.6㎡ 이상 2㎡ 미만</li> </ul> <p>다) 면적 2㎡ 이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이상 2.3㎡ 미만</li> <li>- 2.3㎡ 이상 2.6㎡ 미만</li> <li>- 2.6㎡ 이상 3.0㎡ 미만</li> </ul> <p>라) 면적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 초과하는 면적 0.5㎡당</li> </ul> <p>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미만</li> <li>- 0.5㎡ 이상 0.8㎡ 미만</li> <li>- 0.8㎡ 이상 1㎡ 미만</li> </ul> <p>나) 면적 1㎡ 이상 2㎡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이상 1.3㎡ 미만</li> <li>- 1.3㎡ 이상 1.6㎡ 미만</li> </ul>	<p>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p>	<p>13만원</p> <p>22만원</p> <p>32만원</p> <p>42만원</p> <p>50만원</p> <p>64만원</p> <p>75만원</p> <p>100만원</p> <p>129만원</p> <p>130만원</p> <p>15만원을 더한 금액</p> <p>8만원</p> <p>12만원</p> <p>14만원</p> <p>25만원</p> <p>33만원</p>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1.6㎡ 이상 2㎡ 미만	49만원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58만원
- 2.3㎡ 이상 2.6㎡ 미만	67만원
- 2.6㎡ 이상 3.0㎡ 미만	79만원
라) 면적 3㎡	8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8만원
- 1㎡ 이상 2㎡ 미만	12만원
- 2㎡ 이상 3㎡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22만원
- 3.8㎡ 이상 4.4㎡ 이하	25만원
- 4.5㎡ 이상 5.0㎡ 미만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42만원
- 6.1㎡ 이상 8.0㎡ 이하	58만원
- 8.1㎡ 이상 10.0㎡ 미만	75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장당 8천원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장당 25천원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33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50천원
- 21장 이상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67만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117만원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21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400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⑱ 변 경 사 항	⑲ 비 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sup>2</sup>]

[별지 제2호서식]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 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	-----------------------------------

[별지 제4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 .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p>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p>사    진 (3.5×4.5)</p></div> <p>오   산   시   장</p>
---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격기한( . . . . ~ .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오   산   시   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2px;">직인</div>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의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별지 제7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 등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별지 제9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12호서식]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별지 제13호서식]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오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별지 제14호서식]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인